

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 「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3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목적

-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

2. 지원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< 지원 자격 >

①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*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
*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【사업장 관리번호(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는 개시번호)기준】로 판단

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

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③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(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)

3. 참여제한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< 참여제한 사유 >

-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③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
-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⑤ '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등),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, 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- ⑥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에 한함)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

4. 공모개요

○ 구매비용지원

구 분	내 용	비 고	
공모기간	2026. 3. 4.(수) ~ 4. 15.(수)		
지원대상	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폭염 고위험 업종 해당 사업장	폭염 고위험 업종 : p.3 참조	
지원한도	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	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	
선정방식	선착순 우선 선정		
지원품목	이동식 에어컨, 산업용선풍기, 제빙기, 그늘막		
지원 기준	이동식 에어컨	최대 5대	'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
	산업용 선풍기	최대 5대	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
	제빙기	(건설업 본사) 최대 3대 (그 외 업종) 30인 미만 1대, 30인 이상 2대	
	그늘막	건설업 본사만 지원가능	

※ 지원품목 및 기준 세부사항은 <붙임1-1> 참조

○ **건설현장 패키지임차지원**

구 분	내 용		비 고	
공모기간	2026. 4. 1.(수) ~ 5. 29.(금)			
지원대상	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		건설현장 별 신청 가능	
지원한도	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		공단 판단금액의 80% 지원 (운송, 설치, 부속품 등 비용 포함)	
선정방식	선착순 우선 선정			
지원품목	이동식에어컨, 산업용선풍기, 제빙기, 그늘막		필요품목을 패키지로 구성	
임차가능기간	2026년 5월~10월		최소 3개월~최대 6개월 월 단위로 신청	
지 원 기 준	이동식 에어컨	필수	최소 2대~최대 5대	필수 2대 이상 신청 이동식 에어컨 신청 시 지원 가능
	산업용 선풍기	선택	최대 5대	
	제빙기		최대 3대	
	그늘막		최대 3대	

※ 지원품목 및 기준 세부사항은 <붙임1-2> 참조

5. 지원내용

○ (지원예산) 280억원

○ 지원대상

- (구매비용지원)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

<p>■ 폭염 고위험 업종 : 제조업*, 건설업(90515, 건설업 본사에 한함), 시설관리및서비스업(901**), 도소매업(91001), 농업(6****), 임업(8****), 운수창고업(500**, 501**), 음식업(91002, 음식업에 한함)</p> <p>*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**),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**), ③선박건조및수리업(226**), ④금속제련업(219**)</p> <p>※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재해 발생 통계를 기준으로 폭염 고위험 업종 선정</p>
--

- (패키지임차지원)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대상으로 지원

○ 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

- (구매비용지원) 공단 판단금액의 70% 지원

- (패키지임차지원) 공단 판단금액의 80% 지원

※ 건설업 동일 현장에 대해 '구매비용'과 '패키지임차비용'의 중복 지원 가능

○ 선정방식

-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

○ 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, 제빙기, 그늘막

○ (지원기준) 지원품목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(붙임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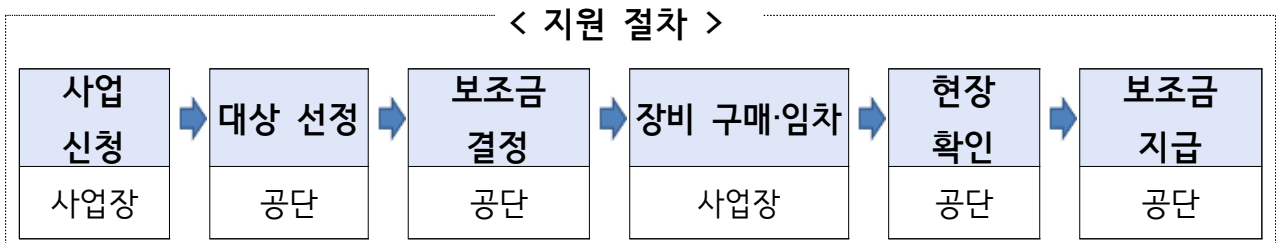
○ (제품선정) 사업주는 성능·사양*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(제조사) 및 판매·임대업체 선정

* 정격냉방능력(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), 소비전력, 배수방법(배수펌프 내장여부, 응축수 물 통(용량) 등), 열풍 배기방법 등

※ (품목, 구매업체 정보)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→ 사업신청·조회→ 지원사업신청→ 건강일터조성지원(온열질환 예방장비)→ [지원품목업체 정보], [이동식에어컨 품목 정보] 참조

※ 패키지임차지원 업체 정보는 붙임7 참조(안내된 업체 외에도 사업주가 제한없이 선정 가능함)

○ (지원절차)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추진

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① 사업신청(사업장)

○ 신청기간

- (구매비용지원) '26. 3. 4.(수) 14:00 ~ 4. 15.(수) 18:00
- (패키지임차지원) '26. 4. 1.(수) 14:00 ~ 5. 29.(금) 18:00

○ (신청방법)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(portal.kosha.or.kr)*에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*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→ 사업신청·조회→ 지원사업신청→ 건강일터조성지원(온열질환 예방장비)→ 공지사항(공고문 확인)→ 사업신청

<유의사항>

- ▶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▶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제작·판매·임대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
○ (제출서류) 사업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온라인 제출

사업신청 시 제출서류	비고
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
② 견적서,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	
③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 -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*, 규격 *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	
④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- [건설업 본사/건설현장] 도급계약서 사본 [그 외 업종] <서식1> 증빙자료	
⑤ 중소기업 확인서[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]	해당 시
⑥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<서식2>

※ 준수사항 이행확인 서약서,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약서, 동의서는 산업안전포털을 통한 사업신청 시 동의 절차에 따라 같음

<제출자료 세부설명>

- ①은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→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 -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 -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
- ②는 견적서에 임차 희망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(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)

② 신청·선정

- (구매비용지원) 폭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
 - ※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
- (패키지임차지원)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
 - ※ 임차신청 가능기간은 '26년 5월~10월로 최소 3개월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, 임차 개시일은 '26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
- 선정 시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고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

③ 보조금 결정

- 보조금 결정 대상자 및 금액 결정(공단)
 - 사업장별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금액 즉시 결정
-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가 불가하며, 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
- (결과 확인)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(portal.kosha.or.kr)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결과 확인 가능

☞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사업신청 내역 > 진행상태 “상세보기” > 결과통보 확인 및 출력

④ 장비 구매·임차

○ 사업신청 시 제출한 투자계획에 부합하게 장비 구매·임차

○ 선금급 신청(사업장 요청 시, 구매비용지원에 한함)
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**선금급 제도**(결정금액의 80% 이내) 시행

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	비고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※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	< 서 식 3 >
② 입금신청 통장 사본(사업주)	
③ 지급보증보험증권 ※ 보험 계약기간은 약정일(선지급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(사 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으로 적용, 가입금액은 보조 결정금액 전체	

* 선금급 신청양식<서식3>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

⑤ **보조금 신청**(투자완료 확인요청)

○ 신청기한

- (구매비용지원)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장비 구매·설치 후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(사업주)

- (패키지임차지원)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, 임차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*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보조금 신청(사업주)

* 임차 시작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미신청 시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○ **보조금 지급 신청 시** 아래 서류를 **공단에 온라인 제출**(사업주)

구 분	비고				
① 입금신청 통장 사본					
②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오프라인 거래 시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온라인 거래 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제품 구매·임차) 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</td> <td>거래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오프라인 거래 시	온라인 거래 시	(제품 구매·임차) 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	거래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	
오프라인 거래 시	온라인 거래 시				
(제품 구매·임차) 계약서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	거래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				
②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					
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				
④ 지급보증보험증권	<붙임4>				
⑤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 ※ 구매비용지원에 한함	<붙임5>				
⑥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	<서식4>				
⑦ 품목별 「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」					
⑧ 보조금 지급 위임장(사업장 요청 및 패키지임차지원 시)	<서식5>				

<보조금 지급에 따른 서류 설명>

②-2 입금증빙서류

오프라인 거래시	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·임대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
온라인 거래시	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 + 제작·판매·임대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택스)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 복사본** *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·임대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**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※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

③은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→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- 특수형태 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- 산재보험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완납 확인증 제출

④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(보조결정)금액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”으로 적용

⑤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30%이상)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3년 2개월”으로 적용

- **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**(사업장 요청시 및 패키지임차지원)
 - 보조금 신청 **사업장 부담 완화**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**신속 투자를 독려**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<서식5>
 - 보조금 신청 시 **자부담금 입금**(부가세 포함) **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**을 제출하고, 보조금은 공단이 판매·임대업체에 지급
 - 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 - **패키지임차지원** 대상 사업장은 **보조금의 산업안전관리비 이중 사용** 방지를 위해 **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필수 이행**

○ **(완료확인) 공단은 사업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* 여부 확인**

* 기 제출한 신청서 내 지원품목의 사양, 제조사, 판매·임대업체 일치 여부 등

⑥ **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**

※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

- **(패키지임차지원)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더라도 불시 현장 확인을** 통해 지원품목의 **적정 사용여부를 확인**

☞ 확인결과 부적정 사용 적발 시 참여제한,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(보조금의 최대 5배)

※ 보조금 지급 이후에는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임차기간, 보조금 지급금액 변경 불가

⑦ **(사후관리) 사후관리는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(구매비용지원에 한함)**

-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**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**

7.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

- **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신청 기업은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**

※ ▲(거짓·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▲(임의매각·훼손·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▲(목적외사용·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②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
- ③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
- ⑤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
- ⑥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8. 기타사항

- **(사업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**

※ 지역별 문의처 <붙임2> 참조

- **사후관리기간 동안 구매비용 지원품목(100만원이상)의 A/S 품질보증을 위하여, 제작·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(3년2개월) 제출**[붙임5 참조]
- **가격의 투명성과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품목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조달청(나라장터)에 등록 바람**

□ 지원조건

품목명	지원기준		비고
	건설업 본사	그 외 업종	
이동식 에어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- 건설업 본사는 건설현장 당 이동식 에어컨 및 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 지원 - 이동식 에어컨은 '25년도 기지원 받은 대수 차감 지원 (개별 사업장 기준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후기술지도 1~3년 • 건설업 본사는 지원 품목의 손망실·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
산업용 선풍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동식 에어컨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 따른 효율관리 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 ■ 노동자 작업장소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, 사무실 냉방 등 용도로 설치 시 지원 불가 ■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초과 지원 불가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예시) 산재보험 가입자 수 4명, '25년 3대 지원받은 사업장은 1대까지 지원 가능 		
제빙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장 규모,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·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업 본사 최대 3대(단, 3대 합산 제빙능력 300Kg 이하) - 그 외 업종 ① 30인 미만 1대(제빙능력 100Kg 이하), ② 30인 이상 최대 2대(단, 2대 합산 제빙능력 200Kg 이하) ■ 노동자 작업장소, 휴게시설에 한정하며 고객 대기실 등 설치 용도로 지원 불가 ■ UV 등을 통한 자동살균 또는 자동세척 기능을 보유한 제품에 한함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후기술지도 1~3년 • 건설업 본사는 지원 품목의 손망실·도난 방지를 위해 반출입 대장 등 작성 • 제빙기 판매 업체는 식약처의 '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'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제빙기 위생관리 철저
그늘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장과 작업거리,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적정수량 판단·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공장부지 등에 설치 시 건축법상 가설건물설치 허가 대상으로 임의설치 불가 	

*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(자금신청 시 제출된 명부 기준)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

□ (가격기준)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(표준가격×70%)를 정하여 지원

구분	표준 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	최대지원한도
					(표준가격×0.7)
이동식 에어컨*	정격 냉방능력**	3,000kcal/h (3,489W)	4,000kcal/h (4,652W)	1,138천원	796천원
		4,000kcal/h (4,652W)	5,000kcal/h (5,815W)	1,228천원	859천원
		5,000kcal/h (5,815W)	6,000kcal/h (6,978W)	1,488천원	1,041천원
		6,000kcal/h (6,978W)	7,000kcal/h (8,140W)	1,713천원	1,199천원
		7,000kcal/h (8,140W)	8,000kcal/h (9,304W)	2,012천원	1,408천원
		8,000kcal/h (9,304W)	9,000kcal/h (10,465W)	2,052천원	1,436천원
		9,000kcal/h~ (10,465W)		2,559천원	1,791천원
산업용 선풍기	날개크기	50cm	75cm	157천원	109천원
		75cm~		182천원	127천원
제빙기	일일 제빙량	50kg/일	75kg/일	715천원	500천원
		75kg/일	100kg/일	1,067천원	746천원
		100kg/일~		1,760천원	1,232천원
그늘막	면적		~5㎡	234천원	163천원
		5㎡	10㎡	256천원	179천원
		10㎡	15㎡	300천원	210천원
		15㎡~		320천원	224천원

* 이동식 에어컨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

** 정격냉방능력의 시험·표시기준 등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서 정하는바에 따름

※ 공단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되었으며, 제품 소재, 성능, 옵션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정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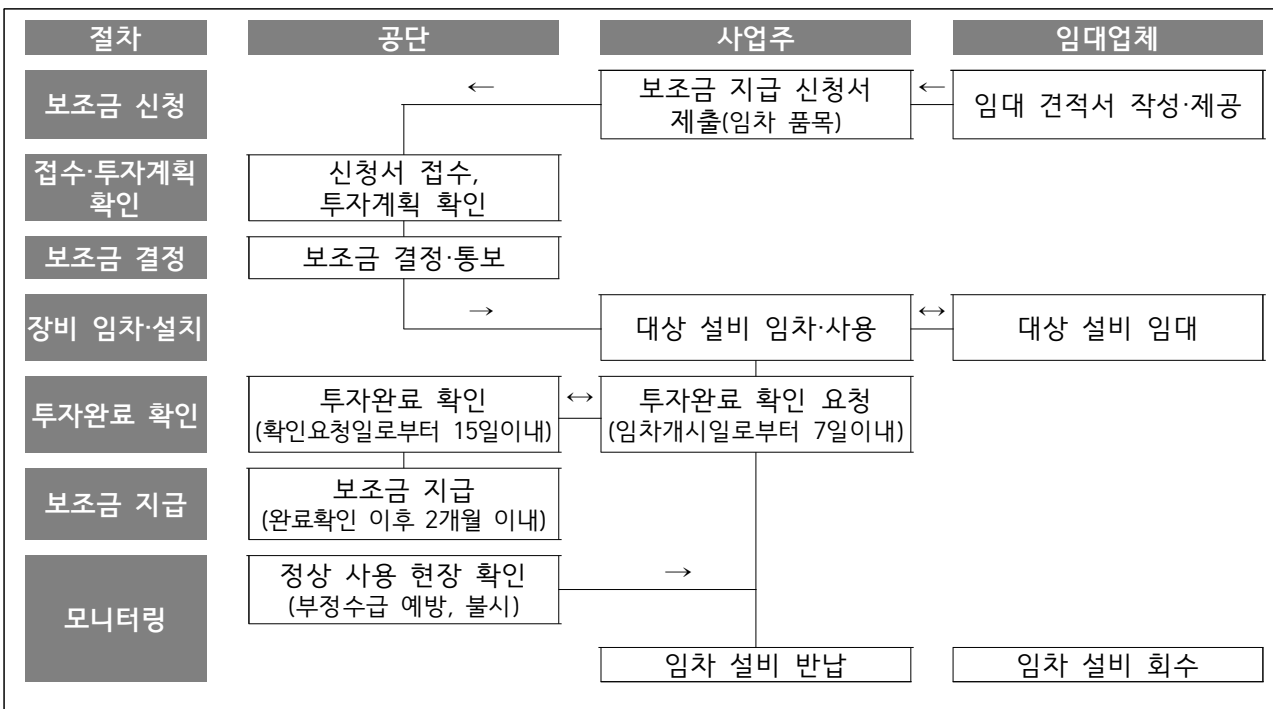
※ 연장자바라, 배기덕트, 측면 그늘막 등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붙임1-2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(건설현장 패키지임차지원)

□ 지원조건

구분	내용	비고
신청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차신청 가능기간: 2026년 5월~10월 ■ 신청기간 : 최소 3개월~최대 6개월(월단위로 신청) 신청예시) M월 DD일 ~N월 DD-1일 지원예시) 임대기간을 5월 20일 ~9월 23일로 4개월+4일 신청 시 4개월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지급 ■ 임차신청기간은 전체공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, 임차종료일은 준공예정일 이전이어야 함 예시) 공사기간: 1.1.~8.31.인 경우 임차종료일은 8.30. 이전으로 최소 3개월 신청해야 지원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현장 단위로 신청 가능 •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시 임차기간 변경 가능 ※ 임차기간 최소 3개월은 변경불가 • 보조금은 임차계약 체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금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지 않음
품목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품목 4종 중 필요한 품목을 패키지 구성 - 필수(이동식 에어컨 2대)+선택(제빙기, 산업용 선풍기, 그늘막) ■ UV 등을 통한 자동살균 또는 자동세척 기능을 보유한 제품에 한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 불필요한 품목은 제외 가능 • 노동자 작업장소, 휴게시설 설치 용도로 지원 • 제빙기 임대업체는 식약처의 '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'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제빙기 위생관리 철저
임차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건설현장 당 이동식 에어컨·산업용 선풍기 각 최대 5대, 제빙기·그늘막 각 최대 3대까지 지원 ■ 이동식 에어컨이 최소 2대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대업체는 임차 물품의 하자 발생 시 동일 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무상 교체 ※ 임차 계약 조건에 포함

□ 임차지원사업 절차도



□ 가격기준

- 지원품목의 주요 제원별로 공단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 한도(표준가격×80%)를 정하여 지원

구분	표준규격	이상	미만	공단판단 표준가격 (1개월 임차기준)	최대지원한도	
					(표준가격×0.8)	
필수 (2대)	이동식 에어컨*	정격 냉방능력**	3,000kcal/h (3,489W)	4,000kcal/h (4,652W)	199천원	159천원
			4,000kcal/h (4,652W)	5,000kcal/h (5,815W)	216천원	172천원
			5,000kcal/h (5,815W)	6,000kcal/h (6,978W)	260천원	208천원
선택	산업용 선풍기	날개크기	50cm	75cm	26천원	20천원
			75cm~		31천원	24천원
	제빙기	일일 제빙능력	25kg/일	~50kg/일	175천원	140천원
			50kg/일	75kg/일	214천원	171천원
			75kg/일~		283천원	226천원
	그늘막	면적		~5㎡	31천원	24천원
			5㎡	10㎡	35천원	28천원
			10㎡~		43천원	34천원

* 이동식 에어컨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완료된 모델에 한함

** 정격냉방능력의 시험·표시기준 등은 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에서 정하는바에 따름

※ 지원품목별 단가(1개월)에 운송, 설치, 부속품 등 비용 포함

붙임2

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

○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일선기관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	02-6711-2835
서울동부지사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	02-2086-8025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	02-6924-8731
강원지역본부	강원특별자치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 가평군	033-815-1043
강원동부지사	강원특별자치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	033-820-2553
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618
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	052-226-0549
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	055-269-0526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	055-371-7563
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	062-949-8753
전북지역본부	전북특별자치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	063-240-8563
전북서부지사	전북특별자치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	063-460-3642
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	061-288-8737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	061-689-4932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32
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66
경기중부지사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	032-680-6547
경기북부지사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강원도(철원군))	031-828-1964
고양파주지사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	031-540-3823
경기광역본부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)	031-296-2822
경기서부지사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	031-481-7532
경기동부지사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	031-785-3325
경기남부지사	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	031-690-1942
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, 군위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	053-609-0545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성주군, 고령군, 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	053-650-6857
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	054-478-8033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	054-271-2022
대전세종 광역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	042-620-5638
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	043-230-7144
충북북부지사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	043-849-1021
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	041-570-3424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

Q. 중소기업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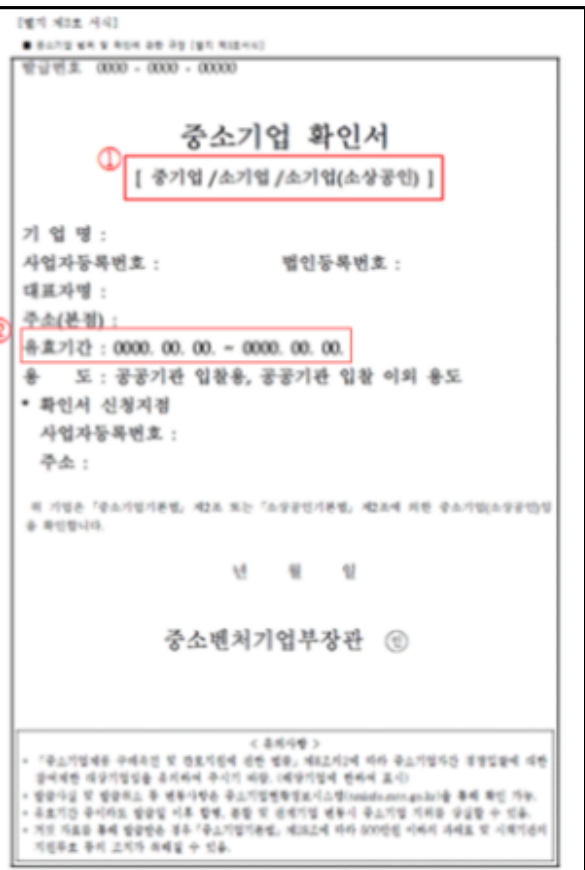
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
- 문의
 - 일반상담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
 - 온라인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: 02-3215-2674



■ 확인사항

-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
- 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
 - 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 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 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<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>

- ▶ 계약기간
 - (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4년
 - (선금급 신청시)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4년 5개월
 - ※ (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'26.9.30.
보험기간: '26.9.19. ~ '30.9.18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)
(예시2 선금급 신청시) 선금급 요청일: '26.9.30.
보험기간: '26.9.19. ~ '30.2.18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 5개월)
- ▶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
- ▶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< 작성 예시(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>

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

(인터넷 발급용)

증권번호 제 [redacted] 호

기본사항			
보험계약자	[redacted]	피보험자	122-82-04898 안전보건공단
보험가입금액	[redacted]	보험료	₩ [redacted]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시납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납
보험기간	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		
보증하는 사항			
보증내용	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		
특별약관	1.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특기사항			
주계약내용	[주계약내용] 주계약명 [redacted] 계약기간 [redacted] 계약체결일자 [redacted] 계약금액 [redacted]		

공인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

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

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

- ▶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3년 2개월로 적용
 - ※ 예시)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'26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6.6.16. 경우
 ☞ '26.6.16. + 3년 2개월 => '26.6.16. ~ '29.8.15.
 -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
 ☞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'26.6.16.이고 '26.6.2.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
 '26.6.2.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'26.6.2. ~ '29.8.1.
- ▶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
 -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
- ▶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)
- ▶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
 -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
 -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<작성 예시 >

하자보증보험증권 (인터넷 발급용)			
증권번호	계 [] 호		
기본사항			
보험계약자		피보험자	
보험가입금액		보험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시납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납
보험기간	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		
보증하는 사항			
보증내용	하자보증금		
특별약관	1.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.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특기사항			
주계약내용	[주계약내용] 주계약명 [] 담보기간 [] 계약체결일자 [] 계약금액 [] 보증금율 []		
	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 30%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(제재부가금 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(부정청구등의 죄)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

(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)

1. 보조지원금액 : 3천만원

2. 총 환수금액 : 최대 1억8천만원 [보조지원금액(3천만원) + 추가환수금(최대 1억5천만원)]

※ 추가환수금 : ①허위·거짓 부정 신청(지급받은금액 × 5배)

②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 등(지급받은금액 × 2배)

구분	주요 사례
(허위·거짓 신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소기업 확인서,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대상 근로자, 발급일 등) 허위 제출 ③ 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(선투자 포함) ④ 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(페이백 등)
(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- 상품설명서, 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
(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, 미사용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※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
(폐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업을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,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※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: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
(투자완료 이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능·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○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·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(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)

연번	업체명	전화번호	취급품목	가능지역
1	GK렌탈	010-4963-9594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, 그늘막	전국
2	은진환경기계	053-383-3033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, 그늘막	전국
3	주식회사이엘	1800-5776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, 그늘막	전국
4	주식회사디코리아	010-8730-9444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	전국
5	아시아기계주식회사	031-796-2500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	서울,경기
6	제일메탈	055-246-1030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선풍기	전국
7	삼성천막렌탈	010-7600-7255	이동식에어컨, 선풍기, 그늘막	전국
8	한일전기	1588-1183	이동식에어컨, 선풍기	전국
9	MBC렌탈	02-2683-4469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	전국
10	(주)다온종합전선	031-797-7411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	전국
11	주식회사더타임	031-914-1212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	전국
12	빌리마켓	1577-0604	이동식에어컨, 제빙기	전국
13	(주)가야	031-356-6483	이동식에어컨	전국
14	경포에어렉스	054-705-0057	이동식에어컨	전국
15	대성열기	062-512-2507	이동식에어컨	전국
16	대신ENG	052-245-6600	이동식에어컨	경남,경북
17	리웰생활과학(주)	032-715-5814	이동식에어컨	전국
18	주식회사명신	055-323-4402	이동식에어컨	전국
19	세계실업(주)	053-961-9000	이동식에어컨	전국
20	세계에어컨	010-2925-1001	이동식에어컨	서울,경기
21	주식회사신성냉열이엔지	031-402-2019	이동식에어컨	전국
22	주식회사에스엠케이	053-522-0881	이동식에어컨	전국
23	주식회사에이시시	051-341-8412	이동식에어컨	전국
24	에이에프아이	070-7954-4088	이동식에어컨	경남,전남
25	에이플러스비전냉난방	042-535-1508	이동식에어컨	전국
26	(주)진우냉동	031-431-2859	이동식에어컨	서울,경기
27	(주)파워쿨	055-783-1212	이동식에어컨	전국
28	주식회사화레이코리아	1588-6067	이동식에어컨	서울,경기

※ 공단은 업체 선정의 편의를 돕기 위한 기본정보만 제공할 뿐 업체에 대한 어떠한 위탁 또는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, 안내된 업체 외에도 제한없이 선정 가능함

※ 지원품목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참여사업장 사업주의 권한이며, 선정된 업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며,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

서식1

지원대수,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

■ 사업장 정보
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
소재지		전화번호	

■ 현장 사진

<p>■ 작업내용 : <i>작업에 대한 개요를 기재</i></p>	
<p><i>사진 첨부</i></p>	<p><i>사진 첨부</i></p>
<p>현장 전경</p>	<p>현장 전경</p>
<p><i>사진 첨부</i></p>	<p><i>사진 첨부</i></p>
<p>현장 전경</p>	<p>현장 전경</p>

※ 설비투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이 되어있어야 함

2026. . .

사업주 확인 : (서명)

보조·용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「재정지원사업*」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약합니다.

* 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), 안전동행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

1. 본인은 공단의 「재정지원사업」으로 보조금(용자금)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·용자지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2.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·용자지원 결정받기 전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·용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3.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·용자지원 결정받은 기계·기구·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·용자지원 받으려는 경우,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·용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.

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,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□ 서약자

- 사업장명 :
-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- 사업주명 :

(서명)

※ 사업주 자필서명 必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·지사)장 귀하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(제17조2 관련)					처리기간
					30일
신청인 (사업주)	성 명		생년월일(성별)	(남,여)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
사업장 현황	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	
	법인등록번호		사업개시번호		
	주 소	(전화번호 :)			
신청설비 설치소재지					
참여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일터 조성지원				
사업기간	착수일자	※ 20 공사착공 또는 기재	완료일자	※ 20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	
참여구분 및 신청설비			지 급 결정액	선금 신청액	채권확보방법
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(등 00개 품목)			천원	천원	
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.					수 수 료 없 음
붙임 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					
20					
신 청 인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·지사)장					

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, 사업주가 제작·판매·임대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
-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·판매·임대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제작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,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.
- (부정수급 개념)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,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

관 련 법 령

[산업안전보건법]

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·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,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, 같은 항 제2호(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)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.

[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]

제28조의2(부정청구등의 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
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급받은 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20 . .

사업장명 :

사업주 성명 :

(서명)

* 사업주 자필서명 必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·지사)장 귀하

서식5

보조금 지급 위임장

보조금 지급 위임장

(제17조제2항 관련)

■ 위임자

(단위: 천원)

재정지원번호		사업장관리번호	
법인등록번호		사업개시번호	
사업장명		대표자 (생년월일-성별)	()
소재지 (전화번호)	☎ - -		

■ 지급받는자(1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 (생년월일-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재지 (전화번호)				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44조제1항 및 「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위임자

(인감 인)

- 붙임 : 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.
 2. 위임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 3.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
 ※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·지사)장 귀하

■ 지급받는자(2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3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4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

■ 지급받는자(5)

(단위: 천원)

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명		공급설비명 (수량)	
사업자 등록번호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	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				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(은행)	예금주	